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장 선출의 건
- 현안질의
-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8
4.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8
5.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	9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 3일 무도하고 참담한 헌법 유린 내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쌓아 올리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대통령과 그 집단에 의하여 흔들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떠한 요건도 절차도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 봉쇄, 군 병력의 투입,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무도한 내란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과 국회는 신속히 대응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현정 질서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통령실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대한 분노들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수사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가 좀 알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월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의 회동에서 비상 계엄을 언급한 이후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도 동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최초 시행자는 충암고 출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이는 그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오랜 기간 사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후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올해 초여름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해 6월에 군 장성 104명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당시 군 내부 정치 조직인 하나회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했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국군 장성들의 조직적인 정보 삭제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40여 년간 군사독재를 극복하며 싸운 군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군 장성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나무위키에서 130명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했던 것, 이것은 바로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고 이 관련자들에게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사 촉구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없는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그리고 경찰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 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공모범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했고 계속적으로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경호대상의 신체상 위험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하도록 할 뿐이지 행정기관 공무집행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수수방관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의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기 대통령실 고위관료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가장 책임 있게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출석요청을 무시하고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무거운 공직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황당한 불법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불법계엄에 공모했는지 여부, 윤석열의 정신 상태, 중인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불러서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저지, 윤석열 출석통지서 수령 거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경호처가 윤석열의 방패막이가 되어 법 집행을 모두 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법 시스템과 우리 헌법 시스템의 작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한 사람의 미친 광기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당장 열고 수사와 헌법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석열과 함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의견 주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전용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은 보내면서 본인들은, 그 관계자들은 불참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중인 신청을 의결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서 신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 및 방조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일으키기 전 그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할 때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고위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공무원들과 고위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배석해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국민 앞에서 신문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운영위 차원에서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반드시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종준 경호처장의 신병을 확보하든지 어떠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수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를 봤을 때 증거인멸 혐의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하루빨리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인 의결을 통해서 국민 앞에 신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충격적인 내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에 대한 동조 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다고 봅니다. 뭐가 꿀려서 못 나오는 겁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위를 중인 채택부터 해서 다시 소집 요구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제보가 있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언론에도 공유를 한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정보사 예하의 HID를 포함해서 공작요원들 30여 명을 실제 선관위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까지가 국방위에서 정보사령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30명이 아니라 38명이었고요. 38명은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4일 날 5시에 출동을 해서 아침 5시 40분까지 선관위에 도착을 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실무자 30명 명단을 받았고요. 가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B1 문서고로 이동을 시켜서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제보자들,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원들은 B1 문서고로 가서 50개 실, 격실을 확인해서 그런 사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 저녁 9시에 정보사 예하의 판교에 있는 모처 부대에서 모여서 실질적으로 정보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22시 30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어서 내일 아침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구금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무력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요원들 간에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는 다른 팀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 서버의 로트번호 사진을 찍은 게 보였는데 로트번호 사진만 있으면 정보사에 해킹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해킹팀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제보도 같이, 또 다른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로 22대 선거라든가 그동안 선거가 부정선거다 하는 거고,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을 조작·획책하고 해서 22대 선거가 부정선거니까 민주당 전부 다 해체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가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은 나와서 이러한 증거를, 이러한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스럽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앞장서서 밝히고 계속 이어지는 내란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12월 3일 계엄군이, 반란군이 국회에 총을 들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들어온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도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전체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란 잔당을 선택한 자들, 내란 잔당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각종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꼭 물었어야 합니다.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실장입니까? 정진석 실장입니까? 경호처장입니까? 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란 잔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10조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그 책임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그러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다라는 2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대체 윤석열을 압수수색하는 데 해해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는지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 잔당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인지해야 됩니다.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경호처가 하는 모든 행위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모든 행위가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내란 행위, 내란 잔당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지금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비서실들이 몽땅 불출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다 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신장식 위원께서 대통령실과 여러 범죄 장소인 안가,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공무소의 책임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실제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내란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는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소급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 절차의 거부는 또 다른 헌법 침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도 적시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소송법에 공무소의 책임자의 승낙, 거부하지 못한다 하는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소에 대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이유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시급히 부진정소급효에 대한 소급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대통령 안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제보받았는데요. 대통령 안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이 경찰청장 조지호를 불러서 구체적 지시를 한 이후에 내보내고 난 다음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는 국회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2·3 계엄이 있던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 이완규 등이 다시 모였는데요. 그때 저는 이 계엄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공범들끼리 모두 입을 맞추고 법률적으로 입틀막을 지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수사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월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당시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지요. 또 지금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꽈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호처 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는데요. 이때도 경호처가 역시 내란 계획과 실행의 핵심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김용현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 인멸을 위해서 시간 별기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바로 하도록 해서 내란 음모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또 계속 열려서 이와 같은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경호처에 경고합니다. 경호처가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 그리고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의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진행발언을 보게 되면 대통령비서실과 그다음에 경호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의견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의결을 하고 나서, 현안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이어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와 협의하여 12월 30일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위원 외 3인 서면동의)

(10시31분)

○위원장 박찬대 그리고 박성준 위원 등으로부터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으로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3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의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3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총 2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2월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22명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5.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안질의와 관련한 서류 등 제출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하려는 것으로 오늘 오후 3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는 서류 등 제출요구를 취합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2월 26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등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던 서미화 위원님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있으신데요.

추가로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불출석한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엄 사태 다음 날 도망치듯 사의를 표명하고 사라진 이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오늘 열린 운영위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 어디 가서 텅텅 비었냐고, 중동 갔느냐고 하시겠습니다.

민심을 듣고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사퇴 카드를 꺼냈다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누구와 함께 어떻게 내란을 공모했는지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는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대통령실의 인사조치를 살펴보니까 이번 내란 사태가 조직적으로 준비됐고 앞으로 있을 탄핵 정국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엄 인사는 작년 10월 신원식 안보실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모두 임명합니다.

이렇게 계엄 인사를 마친 후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자들의 식사 회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는 정치 탄압, 보복 수사를 위해서 검찰 권력으로 사정 정국을 조성했다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관국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고 국회를 무력화할 필요성이 커지니까 결국 정국 돌파 해법으로 인사조치를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혐의자들의 식사 회동이 한창일 무렵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을 대통령실 요직으로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을 임명했고요. 탄핵안 가결 직전 시민사회2비서관·법률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직급들은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로 주목받던 요직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이동 기록은 사정 정국에서 계엄 정국으로,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까지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찬대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실의 24년도 인사기록 일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자료 일체를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란 동조 세력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인사기록 자료 시급히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서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2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 요지	출석 요구일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광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유혜미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정혜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장순칠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장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2024. 12. 30.(월) 10:00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출석요구일시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최병우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		

○출석 위원(18인)

강유정 고민정 김병주 김성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천하람 추미애

○첨가 위원(2인)

강승규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추경호	권성동		
배준영	박형수	국민의 힘	2024. 12. 14.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8)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2024. 12. 9. 박성준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311)

이상 4건 12월 1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이상 7건 12월 11일 회부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6)

이상 4건 12월 1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6)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9)

이상 3건 12월 1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8)

이상 3건 12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4. 12. 1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12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4. 12. 13. 의장 제의)

12월 13일 회부됨